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행복.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1279호 2021. 11. 15.(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1-153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1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1-107호(도로명주소 고시문) 5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2. 개정이유

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개인·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20.10.19.)으로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의 정관과 상이해진 대표이사 임기 명확화

3.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 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조항 신설(제2장, 제8조의2)

나. 선임직 이사의 임기를 규정한 조항에서 대표이사 제외(제3장,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3.(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749-7304, FAX 749-7289
- E-mail : jingy2000@korea.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자료

가. [붙임1] 조례 개정(안)

나.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조례 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포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한 사람,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중 “이사”를 “이사 중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로, “한차례”를 “모두 한차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신·구조문 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7조(임원) ① ~ ③ (생 략)</p> <p>④ 선임직 <u>이사</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차례</u>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 ⑥ (생 략)</p>	<p><u>제8조의2(포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한 사람,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p> <p>제1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이사 중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 모두 한차례-----</u>.</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도로명주소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0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도로명주소

도로명		관련 지번	신규 도로명주소	비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2009.07.09 .	경원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9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선학동 231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496번길 65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11. 0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